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1126호 2016. 12. 27(화)

◀ 규 칙 ▶

-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676호) 2
-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677호) 22

◀ 훈 령 ▶

-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규정(제330호) 24

◀ 고 시 ▶

- 포항 도시관리계획(우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6 - 159호)36

회 람								
--------	--	--	--	--	--	--	--	--

규 칙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이 강 덕

2016년 12월 27일

포항시 규칙 제676호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휘자나 연출자”를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나 예술감독 겸 연출자(이하 “연출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파트장, 부파트장”을 “파트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단무장”을 “사무장”으로, “예술단내”를 “예술단 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무대·분장담당”을 “무대기술감독, 무대·분장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중 “의거”를 각각 “따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단무장의 급여는 27호봉”을 “사무장의 급여는 27호봉으로, 무대기술감독은 20호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2년 단위 이내의 연봉

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고정호봉인 간부단원 및 직책단원경력이 기준호봉을 초과할 시에는 경력산출 호봉을 적용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말일”을 “10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2천원”을 “3천원”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별표 12,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원의 종류와 정원(제4조제1항 관련)

단 체	정 원	비 고
교향악단 (8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감독(간부) 1명 • 부지휘자(간부) 1명 • 악장 1명 • 사무장 1명 • 수석단원 13명 • 차석단원 13명 • 악기담당 2명 • 악보담당 1명 • 총 무 1명 • 단 원 46명 	※단원은 상임·비상임 단원을 포함
합창단 (5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감독(간부) 1명 • 트레이너 1명 • 사무장 1명 • 파트장 4명 • 반주자 2명 • 진행담당 1명 • 무대담당 1명 • 수석단원 4명 • 차석단원 8명 • 악보담당 1명 • 총 무 1명 • 단 원 31명 	※단원은 상임·비상임 단원을 포함
연극단 (2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감독(간부) 1명 • 조연출 1명 • 무대기술감독 1명 • 사무장 1명 • 수석단원 1명 • 차석단원 2명 • 분장담당 1명 • 총 무 1명 • 단 원 15명 	※단원은 상임·비상임 단원을 포함

[별표 2]

단원별 직무(제4조제3항 관련)

직 책	직 무
부지휘자 트레이너 조연출	예술감독을 보좌하고, 수석단원 및 담당, 사무장과 협조하여 전체단원의 기량연마와 공연지도
악장	지휘자, 부지휘자를 보좌하고, 수석단원 및 담당, 사무장과 협조하여 전체단원의 기량연마와 연습지도 등
수석, 차석	트레이너, 조연출, 악장을 보좌하고, 담당 및 사무장과 협조하여 각 담당 파트별 단원의 기량연마와 연습지도
파트장	지휘자, 트레이너를 보좌하고 사무장, 총무와 협조하여 합창단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무대기술감독	예술감독을 보좌하며 연습진행과 공연준비를 맡고 무대설치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연극단이 보유한 모든 장비와 물품들을 관리하며 업무일지와 출근부 등 각종 기록을 담당
사무장	지휘자, 연출자, 트레이너, 조연출을 보좌하고 예술단운영팀장의 지시를 받아 공연기획과 장소물색 등 대외 섭외·홍보활동, 단원들의 복무관리, 업무일지나 정산서 작성 등 예술단 내 일반 행정 처리
반주자	합창단 전체 및 파트별 연습 및 공연을 위한 피아노 반주 지원
총무	지휘자, 연출자 보좌, 복지대행, 식사준비, 각종 제반 광고 등
무대담당	사무장과 협조하여 공연장 내 무대설치 및 공연에 필요한 제반 준비 등을 담당
진행담당	예술단운영팀장의 지시를 받아 정기 및 찾아가는 공연 시 곡 해설 및 공연사회진행 등을 담당
악보담당	악장 및 수, 차석단원, 사무장과 협조하여 연습 및 공연을 위한 악보 준비 및 공연 후 악보정리 재사용 방안 강구
악기담당	악장 및 수, 차석단원, 사무장과 협조하여 연습 및 공연을 위한 악기확보, 악기보관 관리, 운송 수리, 무대설치 및 해체 등을 담당
분장담당	연출 및 조연출을 보좌하고 연극 공연을 위해 배우의 의상 및 소품, 분장을 지원하며 재료의 확보 및 보관관리 등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간부 및 직책단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단원 간 긴밀히 협조하여 예술단 연습과 공연에 충실

[별표 3]

상 임 단 원 본 봉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천원)

호봉	예술단원	호봉	예술단원	비고
정	2,234	18	1,310	
1	802	19	1,328	
2	841	20	1,344	
3	877	21	1,358	
4	914	22	1,371	
5	951	23	1,383	
6	985	24	1,394	
7	1,019	25	1,405	
8	1,062	26	1,415	
9	1,084	27	1,426	
10	1,114	28	1,436	
11	1,143	29	1,447	
12	1,171	30	1,619	
13	1,197	31	1,625	
14	1,222			
15	1,247			
16	1,269			
17	1,290			

[별표 4]

상 임 단 원 예 능 수 당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천원)

호봉	교향악단	기타단체	비고	호봉	교향악단	기타단체	비고
정	684	649		18	379	358	
1	223	206		19	385	365	
2	233	216		20	393	373	
3	242	226		21	400	381	
4	252	236		22	407	386	
5	261	246		23	414	394	
6	272	255		24	420	401	
7	281	265		25	428	408	
8	291	275		26	431	414	
9	300	285		27	437	422	
10	310	294		28	445	429	
11	320	301		29	451	437	
12	331	311		30	459	441	
13	338	319		31	465	446	
14	348	328					
15	354	336					
16	364	345					
17	373	352					

[별표 5]

직 책 수 당 (제5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 천원)

단체별	직 책	수당액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지휘자, 연출자	300
	부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조연출, 사무장, 악기담당, 무대기술감독	250
	수석단원, 반주자, 진행담당, 분장담당, 총무	200
	차석단원, 파트장, 악보담당, 무대담당	130

[별표 9]

비상임단원 출근수당(제8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수당지급액	지급기준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700	- 주 3일 이상 또는 월 13일 이상 출근자에게 지급하되 13일 미만자는 일할 계산

【별표 12】

여비지급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직 책 별	지 급 기 준	비 고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지휘자, 연출자, 부지휘자	4,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	
	트레이너, 악장, 조연출, 수, 차석단원 사무장, 무대기술감독 각 담당 단원 등	6급 이하 ㄹ	

[별표 13]

예술단 운영비 지급기준^[제13조 관련]

(단위 : 천원)

단체별		금 액		지급시기
교향악단		800		매 월
합 창 단		600		
연극단	일반운영비	500		공연을 위하여 무대제작이 있는 달/1회 (제작 참여단원 시간외근무수당 성격)
	무대제작 특별운영비	소공연장	1,300	
		중공연장	1,600	
		대공연장	2,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등) ① (생략)</p> <p>② 각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부단원 외에 직책단원을 두며, 직책단원은 다음 각 호의 단원으로서 <u>지휘자나 연출자</u>의 추천에 의하여 단장이 임명한다.</p> <p>1. (생략)</p> <p>2. 수석·차석단원, <u>파트장</u>, <u>부파트장</u> : 기량이 뛰어나고 파트별 단원의 지도능력이 뛰어난 사람</p> <p>3. <u>단무장</u>, 총무 : <u>예술단내</u>의 행정 및 외부 교섭능력이 뛰어난 사람</p> <p>4. 악기·악보담당, <u>무대·분장담당</u> · 진행담당 : 기량이 뛰어 나고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p> <p>③ (생략)</p> <p>제5조(월급여) ① 각 예술단의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 예능수당, 직책수당, 공연수당 및 복리후생비로 구분하며, 그 용어의 뜻과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휘자와 연극단의 연출자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약에 <u>의거</u>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공연수당"이란 공연을 활성화하고 공연의 종류에 따라 연습기간과</p>	<p>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예술감독 겸 지휘자</u>(이하 "지휘자"라 한다)나 <u>예술감독 겸 연출자</u>(이하 "연출자"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 <u>파트장</u> ----- -----</p> <p>3. <u>사무장</u>----- <u>예술단 내</u>----- -----</p> <p>4. ----- <u>무대기술감독</u>, <u>무대·분장담당</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월급여) ① ----- ----- ----- ----- ----- ----- ----- ----- ----- <u>따라</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p>

공연시간이 서로 다름에 따라 그 특수성을 고려한 급여로서 별표 6의 기준에 의거 공연회수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극단은 작품의 완성기간과 공연횟수를 고려하여 무대 및 소품의 자체 제작을 위한 시간외 근무나 시간외 단체연습을 공연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생략)

② 다른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시립예술단원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8의 겸임수당만을 지급한다. 다만, 지휘자와 연극단의 연출자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거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조(비상임단원 수당지급)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비상임단원은 주 3일 이상 또는 월 13일 이상 출근한 단원에게 별표 9의 출근수당을, 해당 예술단이 실시한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 대해서는 별표 10 및 별표 11의 기준에 의한 예능수당 및 공연수당을 각각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근일수 또는 공연에 참가한 횟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제9조(호봉조정) ① (생략)

 -- 따라 -----

5. (현행과 같음)

② -----

 ----- 따라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비상임단원 수당지급) -----

 ----- 따른 -----

제9조(호봉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교향악단 및 합창단의 지휘자와 연극단의 연출자의 급여는 정호봉으로, 교향악단의 부지휘자 급여는 31호봉으로, 교향악단의 악장, 합창단의 트레이너, 연극단의 조연출의 급여는 29호봉으로, 각 예술단의 단무장의 급여는 27호봉으로 고정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2년 단위 이내의 연봉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1조(여비 등) ① 단원이 공무로 국내·외 출장 시에는 별표 12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운영비) ① 각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별표 13에 의한 운영비를 지급하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연극단 공연에 필요한 무대, 분장, 조명 등을 자체 제작하여 운영할 경우, 무대제작이 있는 달에 한해 별표 13에 의한 특별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지급받은 운영비는 다음 달 말일까지 증빙서

② -----

----- 사무장
의 급여는 27호봉으로, 무대기술감독은 20호봉-----. 다만,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2년 단위 이내의 연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고정호봉인 간부단원 및 직책단원경력이 기준호봉을 초과할 시에는 경력산출 호봉을 적용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여비 등) ① -----
-----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비) ① -----
----- 따른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따른 -----.

③ ----- 따라 -----
----- 10일 -----

류를 붙인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연 입장료)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립예술단 등의 공연입장료는 유료로 하되, 입장권 1매당 최저 2천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문화예술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입장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4조(공연 입장료) -----

----- 3천원 ----- . -----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단원의 종류와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단원의 종류와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단체	정원	비고	단체	정원	비고
교향악단 (80명)	• 지휘자(간부) 1명	※단원은 상임 · 비상임 단원을 포함	교향악단 (80명)	• 예술감독(간부) 1명	※단원은 상임 · 비상임 단원을 포함
	• 부지휘자(간부) 1명			• 부지휘자(간부) 1명	
	• 악장 1명			• 악장 1명	
	• 단무장 1명			• 사무장 1명	
	• 수석단원 12명			• 수석단원 13명	
	• 차석단원 12명			• 차석단원 13명	
	• 악기담당 2명			• 악기담당 2명	
	• 악보담당 1명			• 악보담당 1명	
• 총 무 1명	• 총 무 1명				
• 단 원 48명	• 단 원 46명				
합창단 (56명)	• 지휘자(간부) 1명	※단원은 상임 · 비상임 단원을 포함	합창단 (56명)	• 예술감독(간부) 1명	※단원은 상임 · 비상임 단원을 포함
	• 트레이너 1명			• 트레이너 1명	
	• 단무장 1명			• 사무장 1명	
	• 파트장 4명			• 파트장 4명	
	• 반주자 2명			• 반주자 2명	
	• 진행담당 1명			• 진행담당 1명	
	• 무대담당 1명			• 무대담당 1명	
	• 부파트장<삭 제>4명			• 수석단원<신 설>4명	
	• 악보담당 1명			• 차석단원<신 설>8명	
	• 총 무 1명			• 악보담당 1명	
• 단 원 39명	• 총 무 1명				
• 단 원 31명					
연극단 (24명)	• 연출자(간부) 1명	※단원은 상임 · 비상임 단원을 포함	연극단 (24명)	• 예술감독(간부) 1명	※단원은 상임 · 비상임 단원을 포함
	• 조연출 1명			• 조연출 1명	
	• 단무장 1명			• 무대기술감독<신 설>1명	
	• 수석단원 1명			• 사무장 1명	
	• 차석단원 1명			• 수석단원 1명	
	• 훈련담당<삭 제>1명			• 차석단원 2명	
	• 분장담당 1명			• 분장담당 1명	
	• 총 무 1명			• 총 무 1명	
	• 단 원 16명			• 단 원 15명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단원별 직무 (제4조제3항관련)		[별표 2] 단원별 직무 (제4조제3항 관련)	
직 책	직 무	직 책	직 무
부지휘자 트레이너 조연출	지휘자, 연출자를 보좌하고, 수석단원 및 담당, 단무장과 협조하여 전체 단원의 기량연마와 공연지도	부지휘자 트레이너 조연출	예술감독을 보좌하고, 수석단원 및 담당, 사무장과 협조하여 전체단원의 기량연마와 공연지도
악장	지휘자, 부지휘자를 보좌하고, 수석단원 및 담당, 단무장과 협조하여 전체단원의 기량연마와 연습지도 등	악장	지휘자, 부지휘자를 보좌하고, 수석단원 및 담당, 사무장과 협조하여 전체단원의 기량연마와 연습지도 등
수석, 부수석 파트장, 부파트장	트레이너, 조연출, 악장을 보좌하고, 담당 및 단무장과 협조하여 각 담당 파트별 단원의 기량연마와 연습지도	수석 차석	트레이너, 조연출, 악장을 보좌하고, 담당 및 사무장과 협조하여 각 담당 파트별 단원의 기량연마와 연습지도
단무장	지휘자, 연출자, 트레이너, 조연출을 보좌하고 예술단운영담당의 지시를 받아 공연기획과 장소물색 등 대외섭외·홍보활동, 단원들의 복무관리, 업무일지나 정산서 작성 등 예술단내 일반 행정 처리	파트장 (신설)	지휘자, 트레이너를 보좌하고 사무장, 총무와 협조하여 합창단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반주자 총무	(생략)	무대기술 감독 (신설)	예술감독을 보좌하며 연습진행과 공연준비를 맡고 무대설치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연극단이 보유한 모든 장비와 물품들을 관리하며 업무일지와 출근부 등 각종 기록을 담당
진행담당	예술단운영담당의 지시를 받아 정기 및 찾아가는 공연시 곡해설 및 공연 사회진행 등을 담당	사무장	지휘자, 연출자, 트레이너, 조연출을 보좌하고 예술단운영팀장의 지시를 받아 공연기획과 장소물색 등 대외섭외·홍보활동, 단원들의 복무관리, 업무일지나 정산서 작성 등 예술단내 일반 행정 처리
무대담당	단무장과 협조하여 공연장내 무대설치 및 공연에 필요한 제반준비 등을 담당	반주자 총무	(현행과 같음)
악보담당	악장 및 수,차석단원, 단무장과 협조하여 연습 및 공연을 위한 악보 준비 및 공연후 악보정리 재사용 방안 강구	무대담당	사무장과 협조하여 공연장 내 무대설치 및 공연에 필요한 제반준비 등을 담당
악기담당	악장 및 수,차석단원, 단무장과 협조하여 연습 및 공연을 위한 악기확보, 악기보관 관리, 운송 수리, 무대설치 및 해체 등을 담당	진행담당	예술단운영팀장의 지시를 받아 정기 및 찾아가는 공연 시 곡해설 및 공연 사회진행 등을 담당
훈련담당 (삭제)	연출 및 조연출을 보좌하고 어린이 연극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연극 지도 및 공연을 위해 단원들의 기량 연마를 위한 훈련 지도 등	악보담당	악장 및 수, 차석단원, 사무장과 협조하여 연습 및 공연을 위한 악보 준비 및 공연 후 악보정리 재사용 방안 강구
분장담당	(생략)	악기담당	악장 및 수, 차석단원, 사무장과 협조하여 연습 및 공연을 위한 악기확보, 악기보관 관리, 운송 수리, 무대설치 및 해체 등을 담당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간부 및 직책단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단원간 긴밀히 협조하여 예술단 연습과 공연에 충실	분장담당	(현행과 같음)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간부 및 직책단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단원 간 긴밀히 협조하여 예술단 연습과 공연에 충실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상임단원 본봉 (제5조제1호관련) (단위:천원)				[별표 3] 상임단원 본봉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천원)			
호봉	예술단원	호봉	예술단원	호봉	예술단원	호봉	예술단원
정	<u>2,166</u>	18	<u>1,248</u>	정	<u>2,234</u>	18	<u>1,310</u>
1	<u>764</u>	19	<u>1,265</u>	1	<u>802</u>	19	<u>1,328</u>
2	<u>801</u>	20	<u>1,280</u>	2	<u>841</u>	20	<u>1,344</u>
3	<u>835</u>	21	<u>1,293</u>	3	<u>877</u>	21	<u>1,358</u>
4	<u>870</u>	22	<u>1,306</u>	4	<u>914</u>	22	<u>1,371</u>
5	<u>906</u>	23	<u>1,317</u>	5	<u>951</u>	23	<u>1,383</u>
6	<u>938</u>	24	<u>1,328</u>	6	<u>985</u>	24	<u>1,394</u>
7	<u>970</u>	25	<u>1,338</u>	7	<u>1,019</u>	25	<u>1,405</u>
8	<u>1,002</u>	26	<u>1,348</u>	8	<u>1,062</u>	26	<u>1,415</u>
9	<u>1,032</u>	27	<u>1,358</u>	9	<u>1,084</u>	27	<u>1,426</u>
10	<u>1,061</u>	28	<u>1,368</u>	10	<u>1,114</u>	28	<u>1,436</u>
11	<u>1,089</u>	29	<u>1,378</u>	11	<u>1,143</u>	29	<u>1,447</u>
12	<u>1,115</u>	30	<u>1,611</u>	12	<u>1,171</u>	30	<u>1,619</u>
13	<u>1,140</u>	31	<u>1,765</u>	13	<u>1,197</u>	31	<u>1,625</u>
14	<u>1,164</u>			14	<u>1,222</u>		
15	<u>1,187</u>			15	<u>1,247</u>		
16	<u>1,209</u>			16	<u>1,269</u>		
17	<u>1,229</u>			17	<u>1,290</u>		

현 행				개 정 안			
-----	--	--	--	-------	--	--	--

[별표4] 상임단원 예능수당 (제5조제2호 관련) (단위:천원)						[별표4] 상임단원 예능수당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천원)					
호봉	교향악단	기타단체	호봉	교향악단	기타단체	호봉	교향악단	기타단체	호봉	교향악단	기타단체
정	661	628	18	364	341	정	684	649	18	379	358
1	212	196	19	371	348	1	223	206	19	385	365
2	222	206	20	378	355	2	233	216	20	393	373
3	230	215	21	386	363	3	242	226	21	400	381
4	240	225	22	392	368	4	252	236	22	407	386
5	249	234	23	400	375	5	261	246	23	414	394
6	259	243	24	405	382	6	272	255	24	420	401
7	268	252	25	412	389	7	281	265	25	428	408
8	277	262	26	420	394	8	291	275	26	431	414
9	286	271	27	426	402	9	300	285	27	437	422
10	296	280	28	432	409	10	310	294	28	445	429
11	305	287	29	439	416	11	320	301	29	451	437
12	315	296	30	447	420	12	331	311	30	459	441
13	322	304	31	452	425	13	338	319	31	465	446
14	331	312				14	348	328			
15	339	320				15	354	336			
16	347	329				16	364	345			
17	355	335				17	373	352			

현 행	개 정 안																								
<p>[별표5] 직 책 수 당(제5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5%;">단체별</th> <th style="width:55%;">직 책</th> <th style="width:30%;">수당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td> <td>지휘자, 연출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230</td> </tr> <tr> <td>부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조연출, 단무장, 악기담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170</td> </tr> <tr> <td>수석단원, 파트장, 반주자, 훈련담당, 진행담당, 분장담당, 총무</td> <td style="text-align: center;">115</td> </tr> <tr> <td>차석단원, 부파트장, 악보 담당, 무대담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95</td> </tr> </tbody> </table>	단체별	직 책	수당액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지휘자, 연출자	230	부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조연출, 단무장, 악기담당	170	수석단원, 파트장, 반주자, 훈련담당, 진행담당, 분장담당, 총무	115	차석단원, 부파트장, 악보 담당, 무대담당	95	<p>[별표 5] 직 책 수 당(제5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5%;">단체별</th> <th style="width:55%;">직 책</th> <th style="width:30%;">수당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td> <td>지휘자, 연출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td> </tr> <tr> <td>부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조연출, 사무장, 악기담당, 무대기술감독</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td> </tr> <tr> <td>수석단원, 반주자, 진행담당, 분장담당, 총무</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r> <tr> <td>차석단원, 파트장, 악보담 당, 무대담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td> </tr> </tbody> </table>	단체별	직 책	수당액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지휘자, 연출자	300	부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조연출, 사무장, 악기담당, 무대기술감독	250	수석단원, 반주자, 진행담당, 분장담당, 총무	200	차석단원, 파트장, 악보담 당, 무대담당	130
단체별	직 책	수당액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지휘자, 연출자	230																							
	부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조연출, 단무장, 악기담당	170																							
	수석단원, 파트장, 반주자, 훈련담당, 진행담당, 분장담당, 총무	115																							
	차석단원, 부파트장, 악보 담당, 무대담당	95																							
단체별	직 책	수당액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지휘자, 연출자	300																							
	부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조연출, 사무장, 악기담당, 무대기술감독	250																							
	수석단원, 반주자, 진행담당, 분장담당, 총무	200																							
	차석단원, 파트장, 악보담 당, 무대담당	130																							
<p>[별표9] 비상임단원 출근수당(제8조 관련) (단위: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5%;">단체별</th> <th style="width:15%;">수 당</th> <th style="width:7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td> <td>- 주3일 이상 또는 월13일 이상 출근자에게 지급하되 13일 미만자는 일할 계산</td> </tr> </tbody> </table>	단체별	수 당	비 고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600	- 주3일 이상 또는 월13일 이상 출근자에게 지급하되 13일 미만자는 일할 계산	<p>[별표 9] 비상임단원 출근수당(제8조 관련) (단위: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5%;">구 분</th> <th style="width:15%;">수 당</th> <th style="width:70%;">지급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td> <td>- 주 3일 이상 또는 월 13일 이상 출근자에게 지급하되 13일 미만자는 일할 계산</td> </tr> </tbody> </table>	구 분	수 당	지급기준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700	- 주 3일 이상 또는 월 13일 이상 출근자에게 지급하되 13일 미만자는 일할 계산												
단체별	수 당	비 고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600	- 주3일 이상 또는 월13일 이상 출근자에게 지급하되 13일 미만자는 일할 계산																							
구 분	수 당	지급기준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700	- 주 3일 이상 또는 월 13일 이상 출근자에게 지급하되 13일 미만자는 일할 계산																							
<p>[별표12] 여비지급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5%;">구 분</th> <th style="width:45%;">직 책 별</th> <th style="width:40%;">지 급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td> <td>지휘자, 연출자, 부지휘자</td> <td>4,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td> </tr> <tr> <td>트레이너, 악장, 조연출 수, 차석단원, 단무장, 각 담당 단원 등</td> <td>6급 이하 "</td> </tr> </tbody> </table>	구 분	직 책 별	지 급 기 준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지휘자, 연출자, 부지휘자	4,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	트레이너, 악장, 조연출 수, 차석단원, 단무장, 각 담당 단원 등	6급 이하 "	<p>[별표 12] 여비지급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5%;">구 분</th> <th style="width:45%;">직 책 별</th> <th style="width:40%;">지 급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td> <td>지휘자, 연출자, 부지휘자</td> <td>4,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td> </tr> <tr> <td>트레이너, 악장, 조연출 수, 차석단원, 사무장, 무대기술감독, 각 담당 단원 등</td> <td>6급 이하 "</td> </tr> </tbody> </table>	구 분	직 책 별	지 급 기 준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지휘자, 연출자, 부지휘자	4,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	트레이너, 악장, 조연출 수, 차석단원, 사무장, 무대기술감독, 각 담당 단원 등	6급 이하 "								
구 분	직 책 별	지 급 기 준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지휘자, 연출자, 부지휘자	4,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																							
	트레이너, 악장, 조연출 수, 차석단원, 단무장, 각 담당 단원 등	6급 이하 "																							
구 분	직 책 별	지 급 기 준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지휘자, 연출자, 부지휘자	4,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																							
	트레이너, 악장, 조연출 수, 차석단원, 사무장, 무대기술감독, 각 담당 단원 등	6급 이하 "																							
<p>[별표13] 예술단 운영비 지급기준(제13조 관련)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5%;">단체별</th> <th style="width:85%;">부지휘자, 악장, 조연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연극단</td> <td>일반운영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무대제작 특별운영비</td> <td>소공연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0</td> </tr> <tr> <td>중공연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600</td> </tr> <tr> <td>대공연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r> </tbody> </table>	단체별	부지휘자, 악장, 조연출	연극단	일반운영비	400	무대제작 특별운영비	소공연장	1,300	중공연장	1,600	대공연장	2,000	<p>[별표 13] 예술단 운영비 지급기준(제13조 관련)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5%;">단체별</th> <th style="width:85%;">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연극단</td> <td>일반운영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무대제작 특별운영비</td> <td>소공연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0</td> </tr> <tr> <td>중공연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600</td> </tr> <tr> <td>대공연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r> </tbody> </table>	단체별	금 액	연극단	일반운영비	500	무대제작 특별운영비	소공연장	1,300	중공연장	1,600	대공연장	2,000
단체별	부지휘자, 악장, 조연출																								
연극단	일반운영비	400																							
	무대제작 특별운영비	소공연장		1,300																					
		중공연장	1,600																						
		대공연장	2,000																						
단체별	금 액																								
연극단	일반운영비	500																							
	무대제작 특별운영비	소공연장	1,300																						
		중공연장	1,600																						
		대공연장	2,000																						

1. 개정이유

- 2006년도 이후 계속 동결하였던 시립예술단의 급여를 2016년도에 6%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단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과 예산의 부담을 감안하여 3.5% 정도를 인상함으로써 시립예술단원의 보수와 수당체계를 점차 현실화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각 예술단의 직책단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사무, 공연기획, 홍보 등 직책에 알맞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꾀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문화 수준을 제공코자 함.
- 연극단의 각종 분장재료 및 소품 등 구입에 대한 운영비 지출이 과다하므로, 이를 인상하여 공연작품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연극단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 경제규모 확대 및 물가인상 등에 따라 예술단 입장권 최저 금액을 인상하여 공연작품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립예술단의 급여(본봉 및 수당)를 평균 3.5% 정도 인상
(별표 3, 별표 4)
- 나. 연극단 운영비 인상 : 월 400천원 → 월 500천원(별표 13)
- 다. 직책단원 명칭변경 : 단무장 → 사무장(제4조, 제9조)
- 라. 최저 공연입장료 인상 : 2천원 → 3천원(제14조)
- 마. 법제처의 「일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이 강 덕

2016년 12월 27일

포항시 규칙 제677호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2호 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서 제5조(위탁기간 및 근무시간) 1. <u>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고,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2. (생 략)</p>	<p>[별지 제2호 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서 제5조(위탁기간 및 근무시간) 1. <u>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u> 2. (현행과 같음)</p>

1. 개정이유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위탁 기간이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 2016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침에도 업무위탁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재위탁하도록 되어 있어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맞지 않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별지 제2호 서식 중 제5조제1호)

훈 령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포 항 시 장 이 강 덕

2016년 12월 27일

포항시 훈령 제330호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조직, 채용, 복무,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채용되는 사무국장,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조직구성) ①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 센터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계약직으로, 센터장 및 직원은 일반직으로 하고 직급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단기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4조(채용) ① 사무국장 및 센터장 등 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항시장이 임용한다.
②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직무상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 내 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노사관계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많은 사람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센터장 등 직원은 일반직으로 채용한다.
④ 단기 근로자는 10월 미만으로 채용하고, 채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직원의 채용 직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5조(응시자 제출서류) 사무국장 및 직원의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소정양식)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관련분야 대학교 및 전문대 자격자는 졸업증명서
5. 관련분야 자격 또는 면허증, 교육이수 증명서
6. 관련분야 경력자는 해당 기관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6조(경력연수산정) 사무국장 및 직원의 호봉산정에 필요한 경력연수의 계산은 별표 3의 경력환산 기준표에 따른다.

제7조(복무) ① 직원은 사무국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직무를 처리할 때 소속 장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야 한다.

3. 직원은 직무와 관계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사를 분명히 하여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의 근무시간, 출장, 시간 외 근무, 휴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 등의 일수 및 절차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하며, 근무상황 관련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 및 직원이 제2항에 따라 출장을 가거나 휴가 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무국장은 협의회 실무협의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신분보장) ① 직원은 징계처분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 만 60세
 2. 계약직 : 2년 이내, 단 근무성과를 통하여 연임 가능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면직한다.

1. 제2항 및 제4조제6항에 해당된 때
2. 사망한 때

제9조(징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

1.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협의회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협의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

② 징계의 종류 및 징계양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호봉의 승급) ① 직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 호봉의 획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호봉 획정보에 따른다.

③ 직원이 해당 직급 호봉의 최고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수) ①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의 보수지급 기준은 별표 4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보수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보수의 계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초임호봉의 획정)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하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경력환산 기준표에 따라 경력을 가산하여 별표 5와 같이 획정한다. 이 경우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직원에게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간 외 근무수당)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복리후생 및 실비보상) ①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

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직급보조비 등을 별표 4의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출장명령을 받아 출장임무를 수행한 직원에게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16조 (성과상여금) ① 사무국장 및 직원에게 개인별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은 포항시의 평가결과에 따르며, 사무국장에게는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퇴직급여금) ①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② 기존 재직자가 연봉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퇴직금 적용대상자로 간주한다.

③ 퇴직급여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별표 6의 퇴직급여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④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8조(퇴직급여금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급여금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사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9조(급식 및 피복지급) ① 직원이 필요에 따라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에게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센터 운영위원회) ① 비정규직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실무협의회에서 대신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종별 직급 및 직위

직 종	직 급	직 위
계 약 직	5급 상당	사무국장
일 반 직	6급 상당	센 터 장
일 반 직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과 장 대 리 주 임

[별표 2]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직원의 채용 직급 및 자격기준

구 분		경 력 및 자 격 기 준
사 무 국 장	5급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산하, 출연, 출자기관 포함) 5급 또는 6급으로 9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노사관계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부 또는 경상북도에 등록된 채용과 관련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채용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단체에 한정함) ○ 대학교 졸업자로서 채용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 졸업자로서 채용분야에서 1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채용분야에서 1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센 터 장	6급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산하, 출연, 출자기관 포함) 6급 또는 7급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노사관계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부 또는 경상북도에 등록된 채용과 관련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채용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단체에 한정함) ○ 대학교 졸업자로서 채용분야에서 8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 졸업자로서 채용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채용분야에서 1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과 장	7급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산하, 출연, 출자기관 포함) 7급 또는 8급으로 5년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 노사관계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부 또는 경상북도에 등록된 채용과 관련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채용 관련 분야에서 동급 이상으로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단체에 한정함) ○ 대학교 졸업자로서 채용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 졸업자로서 채용분야에서 8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채용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대 리	8급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산하, 출연, 출자기관 포함) 8급 또는 9급으로 3년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 노사관계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부 또는 경상북도에 등록된 채용과 관련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채용 관련 분야에서 동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단체에 한정함) ○ 대학교 졸업자로서 채용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 졸업자로서 채용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채용분야에서 8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주 임	9급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산하, 출연, 출자기관 포함) 9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노사관계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부 또는 경상북도에 등록된 채용과 관련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채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단체에 한정함)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채용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3]

경 력 환 산 기 준 표

구 분	경 력 내 용	환산율
공공기관 등 근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 ○ 법률에 따른 군 경력 및 군무원 경력 ○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경력 ○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50% 상한10년
공통사항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군 경력	100%

[별표 4]

기본급 및 수당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항 목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기본급 및 정액수당	기본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직급별 경력환산 적용 인정상한 10년
	정근수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정근수당 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직급보조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명절휴가비	기본급×60%×2회	
	정액급식비	월 130,000	
	대민활동비	월 50,000	
부가수당	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자녀학비보조수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연가보상금	기본급(기준호봉)의 86% × 1/30 × 10일 이내	
	시간 외 근무수당	기본급(기준호봉)×55%/209 × 150% × 시간	
상여금	성과상여금	포항시 평가에 따름	

[별표 5]

직급별 호봉 확정

구 분	공무원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9급
	계약직	일반 6급	일반 7급	일반 8급	일반 9급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적용				
2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며				
3	- 운영규정에 따른 경력자의 경우에는 환산표에 따라				
4	초임호봉을 책정하며 상한선은 10년으로 함				
.					
.					

[별표 6]

퇴직급여 지급률

구 분	지 급 율	비 고
계약, 일반직	근속연수 × 평균임금(고용노동부 지침)	

1. 제정이유

- 고용안정, 일자리 등 노사관계의 발전과 노사민정협의회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조직, 채용, 보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구성(제3조) : 사무국장, 비정규직지원센터장 및 직원 등

나. 채용(제4조)

- 임용권자 : 포항시장
- 직 종 : 사무국장(계약직), 센터장 등 직원(일반직)

다.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제7조 ~ 제9조)

- 사무국장 : 계약기간 2년 이내(실적에 따라 재계약 가능)
- 일반직 : 징계 등 당연 면직 외에는 만 60세까지

라. 보수 및 복리후생 등(제10조 ~ 제16조)

-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 규정 준용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6 - 159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우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13-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우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12. 23 .

포 항 시 장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함.
 - 2016. 7. 13일자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포항시 고시 2016-91호)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고자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내용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54	우현지구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13-3일원	45,189	-	45,189	포항고 체2012-51호 (‘12.06.18.)	포항075 제2종일반주거, 최고고도지구(50m)

2)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45,189	-	45,189	100.0	포항075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3	우현지구	최고 고도지구	우현동 산13-3일원	50m이하	45,189	포항고 체2012-51호 (‘12.06.18.)	포항 075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공원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0	우현 6공원	어린이 공원	우현동 산13번지 일원	222	-	222	포항고 체2016-91호 (‘16.07.13.)	포항075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내 공원과 합병)

나) 녹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8	녹지	경관 녹지	우현동 산10-4번 지 일원	66	-	66	포항고 체2016-91호 (‘16.07.13.)	포항075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내 녹지와 합병)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5,189	-	45,189	포항고 체2016-91호 (‘16.07.13.)	
A-1	A	33,755	감)76	33,679		공동주택용지
B-1	B	11,146	증)76	11,222		종교시설용지
C-1	C	222	-	222		공원용지 (어린이공원)
D-1	D	66	-	66		녹지용지 (경관녹지)

나) 획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획지 번호	획지 위치	획지면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개 획지	45,189	-	45,189	포항고 체2016-91호 (‘16.07.13.)	
A-1	1	우현동 산13-3 번지 일원	33,755	감)76	33,679		공동주택용지
B-1	1	우현동 산10-3 번지 일원	11,146	증)76	11,222		종교시설용지
C-1	1	우현동 산13 번지 일원	222	-	222		공원용지 (어린이공원)
D-1	1	우현동 산10-4 번지 일원	66	-	66		녹지용지 (경관녹지)

다)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A-1	가구 및 획지	· 공동주택용지 면적 감소 - A=33,755㎡→33,679㎡ 감) 76㎡	· 종교시설(늘사랑교회)에 대한 기존 건축물과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가 부족하여 대지경계선 변경으로 인한 공동주택용지 및 종교시설용지 면적 변경
B-1	가구 및 획지	· 종교시설용지 면적 증가 - A=11,146㎡→11,222㎡ 증) 76㎡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우현동 산13-3일원	용 도	지정용도	·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16층 이하 (50m 이하)	
		배 치	· 일조량, 통풍 등을 감안하여 남향배치 권장 및 관계법령에 의한 인동거리 유지	
		형 태	· 판상형 및 경사지붕 권장	
		색 채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색채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과 동일하게 지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1	우현동 산10-3일원	용 도	지정용도	·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포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6층 이하 (50m 이하)	
		배 치	· 기존교회와 연계하여 배치 권장	
		형 태	· 평지붕 권장	
		색 채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색채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과 동일하게 지정			

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내용

1) 해제지역 및 해제사유

지구명	위 치	면 적 (㎡)	해제사유	비 고
우현지구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13-3일원	45,600	지구단위계획 수립완료 포항고 제2016-91호 (‘16.07.13.)	

2) 해제시기 :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고시일부터

3. 포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지역 및 지형도면 : 도면 실음 생략(비치 도서와 같음)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